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5087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5087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454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1. F

2. G

변론 종결 2014. 10. 2.

판결 선고 2014. 11. 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454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7. 16. 접수 제226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195,000,0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C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112,564,4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용보증사고에서 제외시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신용보증사고 제외처리와는 달리, 부실유보처리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채무자의 신용상태 악화는 인정하되 정상적인 결제를 통한 부실정상화를 기대하며 일단 부실처리만 유보하는 것인바, 2012. 5.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부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A의 신용상태 악화를 우려하여 2010.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2. 9. 11. 부실유보처리를 하였으므로, 2012. 5. 23. 또는 2010. 8. 10. 신용보증사고 및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2013. 4. 22. 국민은행에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전구상권 발생 후에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사전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후 실제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C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적담보로 제공한다면 스스로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2. 5. 23.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I가 국세 5,567,418원을 체납하였다는 신용관리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어 A에 대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13. 위 부실사유를 접수하였으나, '보증부대출이 구매자금대출이므로 건별 상환기일 도래 시 정상적인 결제를 통하여 부실정상화가 확실하고, 기금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2012. 9. 11. 부실유보처리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A가 2013. 3. 7. 보증부대출금의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부실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3. 8. 부실유보를 취소한 후 2013. 4. 22.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법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점, ② 원고는 2012. 7. 13. A의 실질적 경영자인 I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었다는 부실사유를 접수하였으나, 2012. 9. 11. 정상적인 결제를 통하여 부실정상화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실처리를 유보하였던 점, ③ I의 국세 체납액이 550여만 원에 불과한 점,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위 부실유보처리 전에 이루어진 점, 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A가 부실하다는 통지를 받고 부실유보를 취소한 후 2013. 4. 22.

국민은행에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I의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A의 신용상태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실유보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I의 국세 체납 등록일이나 위 가압류가 이루어진 날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A가 부실하다는 통지를 받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부실유보처리를 취소한 2013. 3. 8. 비로소 사전구상권이, 2013. 4. 22.

대위변제에 따른 사후구상권이 각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위 각 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일로부터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약 8개월 가량, 사후구상권은 약 9개월 가량 각 경과한 후 비로소 발생한 점, ② 원고도 2012. 7. 13. I의 국세체납 통보를 받고, A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12.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보전조치만을 취하였고, 2012. 9. 11. 정상적인 결제를 통하여 부실정상화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실처리를 유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사전 혹은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임상민

판사이승훈

별지